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278호(號) 1927(昭和 2)년 12월 2일 금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404호(號)

1927(昭和 2)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77호(號) 조선총독부 철도국선(朝鮮總督府鐵道局線)과 철도성선(鐵道省線) 간(間) 및 조선총독부 철도국선(朝鮮總督府鐵道局線) 경유(經由) 남만주 철도주식회사선(南滿洲鐵道株式會社線)과 철도성선(鐵道省線) 간(間) 여객 및 하물연대 운수 규칙(旅客及荷物連帶運輸規則) 중(中)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27(昭和 2)년 12월 2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자작(子爵) 사이토 마코토(齋藤實)

제9조(條)제4항(項) 중(中) 「제26조(條)」의 다음에 「및 제26조(條)의2」를 추가(追加)함.

[참조(參照)]

제26조(條)의2 가고시마(鹿兒島) 또는 니시가고시마(西鹿兒島)와 야쓰시로(八代) 및 동(同) 역(驛), 이북(以北) 각(各) 역(驛)과의 상호간(相互間)에 있어서 철도(鐵道)의 여객운임(旅客運賃)은 가고시마(鹿兒島) 본선(本線)을 경유(經由)한 경우라도 히사쓰선(肥薩線) 경유(經由: 가고시마[鹿兒島]로부터 또는 동[同]역[驛]까지)의 마일 수(哩程·mileage)에 의하여 이것을 계산(計算)함.